

관세청, 소상공인·혁신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

- 소상공인 지원 분야를 신설하여 맞춤형 지원 요건 도입
- 수출 바우처 기업,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
- 일·가정 양립 가족친화인증기업,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

□ 관세청은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일(금)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.

<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내용 >

분 야	원 칙	세 정 지 원
①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	■ 수입신고 수리일 ~ 15일 이내	■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■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
② 체납자 회생지원	■ 통관보류, 체납사실 통보 등	■ 통관허용, 체납사실 통보 유예 등
③ 수출환급	■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 처리	■ 당일 지급(선지급 후심사)
④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	■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	■ 통관 후 정산 시까지 납부 유예 (최대1년)
⑤ 관세조사 유예	■ 정기 관세조사 수행	■ 관세조사 유예(1년)

□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,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.

-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,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 **완화된 기준**을 적용하여 ‘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’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.
- 그간 세정지원 대상은 ‘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’으로 **통합되어**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.

□ 둘째, 원산지 인증수출자, 수출 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.

- 2025년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,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및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을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 기업*에 추가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.

* 2024년 기준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은 '수출의 탑' 수상 기업, 전문무역상사, 관세청이 확인한 수출우수기업·수출중소기업만 해당되었음

□ 셋째,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·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관세 조사 유예 혜택을 확대한다.

- 관세청은 2023년부터 일·가정 양립 문화 조성 및 이를 통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일·생활 균형^{구·근무혁신}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해 왔다.
- 올해부터는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으로 자녀 출산·양육 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 중 일·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추가하였다.

□ 넷째, 납부기한 연장(분할납부) 승인 시 추정세액 관련 기준금액을 폐지한다.

- 기존에는 5천만원 이상 추정세액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하였으나, 2025년 하반기부터는 그 기준금액을 폐지하여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.

□ 마지막으로,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.

- 현재는 세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지원이 급히 필요한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,
-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하여 기업이 빠르고 쉽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약 1천 3백여 개 기업에 5천2백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.

< 2025년 상반기 관세청 세정지원 실적 >

구 분	'25. 6월말 기준					합계
	① 납기연장 ·분할납부	② 체납자 회생지원	③ 환급금 찾아주기	④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	⑤ 관세조사 유예	
업체수(개사)	62	430	379	431	10	1,312
금액(억원)	214	651	85	4,215	-	5,165

○ 주요 세정지원 사례를 살펴보면,

- (납부기한 연장)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은행권 차입이 어려운 A사는 세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수입시 납부할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아 10개월간 약 129억 원의 유동성 확보
- (환급금 찾아주기) 영세기업인 B사는 수출하였음에도 관세 환급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다가 세관의 현장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관세 4천 2백만 원을 환급받음.
- (체납자 회생지원) 체납 중인 C사는 부동산이 압류되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나, 세관·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어 기계 설비 증설 및 매출 증가 후 체납액 1억 원 납부

□ 관세청 관계자는 ‘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’이라며

○ “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성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관세청 세원심사과	책임자	과 장	오현진 (042-481-7870)
		담당자	사무관	주미옥 (042-481-7871)
	관세청 기업심사과	책임자	과 장	신재형 (042-481-7980)
		담당자	사무관	문경환 (042-481-7656)

참고

세관 상담 창구

□ 납기연장·분할납부 및 수출 환급

세관	납기연장·분할납부		수출 환급 지원	
	부서명	전화번호	부서명	전화번호
인천공항본부	심사정보과	032-722-4353	심사정보과	032-722-4361
김포공항	조사심사과	02-6930-4942	조사심사과	02-6930-4942
서울본부	심사정보과	02-510-1312	환급심사과	02-510-1362
안양	조사심사과	031-596-2022	조사심사과	031-596-2024
천안	"	041-640-2324	"	041-640-2333
청주	"	043-717-5733	"	043-717-5733
대전	"	042-717-2258	"	042-717-2264
속초	"	033-820-2147	"	033-820-2147
동해	—	033-539-2671	—	033-539-2672
성남	—	031-697-2589	—	031-697-2582
파주	—	031-934-2816	—	031-934-2805
부산본부	심사정보과	051-620-6378	심사정보과	051-620-6387
김해공항	조사심사과	051-899-7264	조사심사과	051-899-7264
용당	"	051-793-7123	"	051-793-7124
양산	"	055-783-7328	"	055-783-7325
창원	"	055-210-7633	"	055-210-7632
마산	"	055-981-7035	"	055-981-7035
경남남부	"	055-639-7534	"	055-639-7534
경남서부	—	055-750-7907	—	055-750-7912
인천본부	심사정보과	032-452-3049	심사정보과	032-452-3325
수원	조사심사과	031-547-3977	조사심사과	031-547-3962
안산	"	031-8085-3823	"	031-8085-3831
대구본부	납세지원과	053-230-5314	납세지원과	053-230-5312
울산	조사심사과	052-278-2265	조사심사과	052-278-2287
구미	"	054-469-5639	"	054-469-5632
포항	"	054-720-5733	"	054-720-5732
광주본부	심사과	062-975-8064	심사과	062-975-8063
광양	조사심사과	061-797-8433	조사심사과	061-797-8433
목포	"	061-460-8544	"	061-460-8542
여수	"	061-660-8673	"	061-660-8673
군산	"	063-730-8751	"	063-730-8745
제주	"	064-797-8853	"	064-797-8866
전주	—	063-710-8975	—	063-710-8974
평택직할	심사과	031-8054-7185	심사과	031-8054-7185

□ 체납자 회생

- (서울세관 체납관리과) 02-510-1342, (부산세관 체납관리과) 051-620-6391
(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) 032-722-4062